

#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제도 안내

MSDS, 이렇게 작성·제출하세요!



\*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, Material Safety Data Sheets)란?

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정보, 응급조치요령,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,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  
안전보건공단

##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제도 개정 안내

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고, 그로부터 1년 후인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관련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

### MSDS 제도 요약

구분	내용	과태료
MSDS 작성	작성 주체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조·수입자 ② 국외제조사가 선임한 자	
	기재 항목 구성성분 중 유해·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* 유해·위험한 화학물질 :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의 유해·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성분 ※ 유해·위험하지 않은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은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	MSDS 미제출 시 <b>500만원 이하</b> 과태료, 화학물질 명칭·함유량 미제출 시 <b>500만원 이하</b> 과태료, 화학물질확인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 시 <b>500만원 이하</b> 과태료
MSDS 제출	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·수입자는 제조·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* 유해·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은 별도로 공단에 제출 ※ 제출이 완료되면 MSDS에 고유 번호가 부여됨	
MSDS 제공	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·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·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제공 * 양도·제공하는 자가 제조·수입자로부터 변경된 MSDS를 제공받는 경우, 이를 양도·제공받는 자에게 제공	MSDS 미제공 시 <b>500만원 이하</b> 과태료, 변경된 MSDS 미제공 시 <b>300만원 이하</b> 과태료
비공개 승인 심사	MSDS 구성성분 중 영업비밀인 사항 (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)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,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	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 시 <b>500만원 이하</b> 과태료
국외제조사의 선임자	국외제조사는 국내수입자를 갈아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MSDS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 선임 가능	선임자로서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수입자에게 MSDS 미제공 시 <b>500만원 이하</b> 과태료
MSDS 게시·교육	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MSDS를 게시·비치,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MSDS 교육 실시	MSDS 미게시·비치 시 <b>500만원 이하</b> 과태료, MSDS 교육 미실시 시 <b>300만원 이하</b> 과태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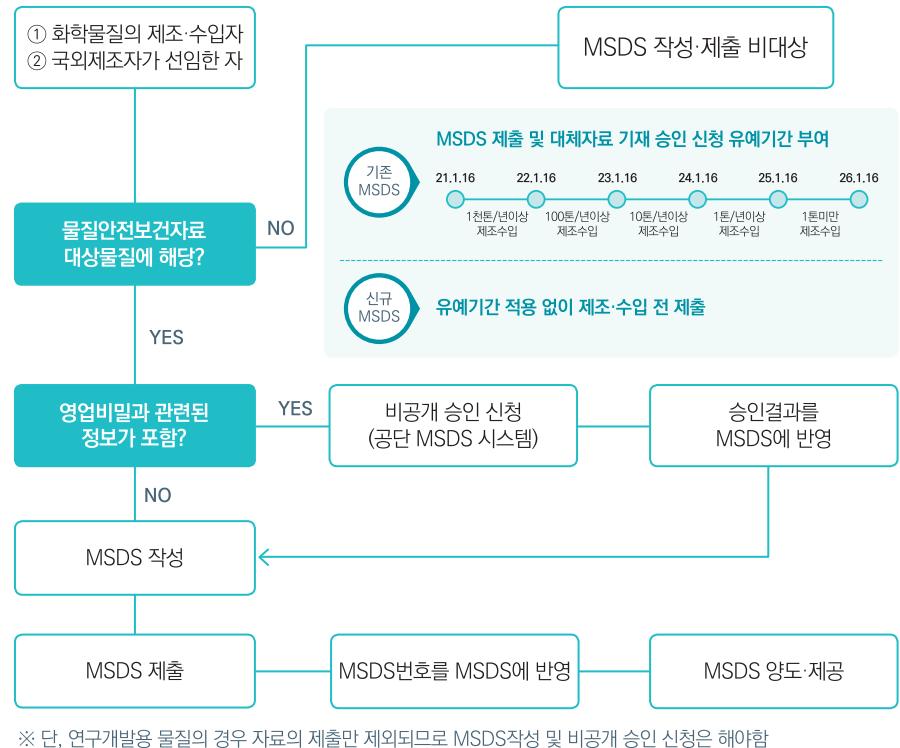
### 관련 법적 근거

-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~114조

- 제110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)
- 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- 제112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)
- 제113조(국외제조사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제출 등)
- 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-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9호 「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」

### MSDS 작성·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 절차



##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·제출해야 합니다!

### 01 MSDS 작성·제출

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**제조·수입 전에**  
MSDS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\*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: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 
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(다만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)

#### ※ MSDS 작성

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·제출, 비공개 정보 승인 시스템(이하 “물질안전보건  
자료시스템”)의 MSDS 작성 메뉴를 통하여 작성 가능

[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\(<https://msds.kosha.or.kr>\)](https://msds.kosha.or.kr) – MSDS 작성 – 신규작성

\* 회원가입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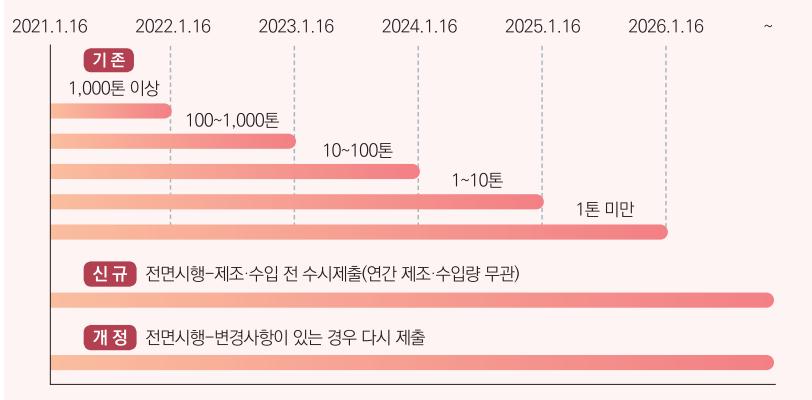
### 02 MSDS 작성·제출 주체

1.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
2.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

### 03 제출서류 목록

1.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2.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 
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
  - \* ①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
  - ② 수입품의 경우, “화학물질 확인서류”를 국외제조자로부터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(산업  
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62호 서식] 참고)

### 04 MSDS 제출 시기



#### 1. 기존 작성 MSDS(‘21.1.16. 이전부터 작성되어 유통되고 있던 MSDS)인 경우

위 표를 확인하여,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에 따라 부여되는 유예기간 내에 제출 (단, 중간제품 제조자의 경우 원료 제조·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인 2026년 1월 16일까지 제출 가능)

\*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은 법 시행일 전년도(2020년)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함

[법적근거]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조~제9조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9조~제11조

#### 2. 신규 작성 MSDS(‘21.1.16. 이후 신규로 작성된 MSDS)인 경우

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제출(단, 중간제품 제조자의 경우 종전법에 따라 MSDS를 작성하고 제출해도 제도 이행으로 간주)

\* 신규제도를 이행한 MSDS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중간제품의 MSDS를 다시 작성·제출해야 함

#### 3. MSDS 제출 이후 아래의 변경사항 발생 시,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다시 제출

- ① 제품명 (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)
-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(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)
- ③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, 물리적 위험성



## 05 MSDS 제출 방법

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(<https://msds.kosha.or.kr>)의 MSDS 제출 메뉴를 통하여 제출 가능

###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– MSDS 제출 – 최초 MSDS 제출

\* 회원가입 필요

## 06 MSDS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대상

[법적근거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것

1.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15가지 타법에 따른 것 등

- ①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
- ② 「농약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
- ③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
- ④ 「비료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
- ⑤ 「사료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
- ⑥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
- ⑦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
- ⑧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
- ⑨ 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
- ⑩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
- ⑪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
- ⑫-1 「의료기기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
- ⑫-2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
- ⑬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
- ⑭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
- ⑮ 「화장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

2.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(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)

3. 독성·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

① 양도·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 
(다만, 해당 혼합물을 양도·제공하거나 연구·개발 절차를 거쳐 생산된 최종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)

②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(다만,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)

4. 연구·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

※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므로 MSDS 작성(비공개 승인 심사 포함)은 해야 함

### ※ 연구·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인 경우란?

- ① 시약 등 과학적 실험·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
- ②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
- ③ 생산 공정을 개선·개발하기 위한 경우
- ④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
- ⑤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

## 07 유의사항

1. MSDS 제출 시 제품명, 제조자/공급자 정보, MSDS 제·개정일자 등을 기재해야 하며, 48가지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 
[참고사항]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9호〈별표5〉 용도분류체계 참고

2. MSDS를 양도·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해야 합니다.

3.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MSDS를 양도·제공 가능

영업비밀을 보호받고 싶다면,  
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!

## 01 MSDS 비공개 승인 심사

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유해·위험성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,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적절한 대체자료로 작성해야 합니다.

\* 심사 기준 : ①비공개 타당성 ②대체자료의 적합성 ③MSDS의 적정성

## 02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자

1.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
2.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



## 03 제출서류 목록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서식]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첨부 서류

- ① 「부정경쟁방지법」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
- ② 대체자료
- ③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,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, 물리적 위험성 정보
- ④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- ⑤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
- ⑥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
\*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–비공개신청 – ‘영업비밀 입증자료 작성 도우미’ 참고

※ 연구·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① 및 ⑥의 자료를 생략 가능

### 3-1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란?

[법적근거]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9호 「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」<별표 7>

#### 가. 비공지성

- 1) 비공개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범위
- 2) 비공개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

#### 나. 비밀관리성

- 1) 비공개 신청 화학물질 제조·수입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(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, 내부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,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,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환경 마련 등 포함)
- 2) 비공개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

#### 다. 경제적 유용성

- 1) 비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
- 2) 비공개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제조·수입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

### 3-2 대체자료란?

대체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

#### 가. 대체명칭

환경부 고시「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의 별표 「총칭명의 명명방법」을 준용하여 작성  
※ 화학식과 구조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

#### 나. 대체함유량

- ①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% 이상인 경우 ±20퍼센트포인트(%P) 범위 이내로 기재
- ②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% 미만인 경우 ±10퍼센트포인트(%P) 범위 이내로 기재

### 04 MSDS 비공개 승인 신청 시기

#### 물질안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전

(MSDS 제출 시기와 동일하나, 제출 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거쳐야 MSDS 상에 대체자료로 기재 가능)

※ 5페이지 MSDS 제출시기 표 참고



### 05 MSDS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방법

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(<https://msds.kosha.or.kr>)의 비공개 신청 메뉴를 통하여 신청 가능

#### 물질안보건자료시스템 – 비공개 신청 – 비공개 신청

\* 회원가입 필요

### 06 처리 절차



※ 승인 심사 시 1개월 소요 (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2주 소요)

### 07 신청 시 주의사항

1. 승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,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2주 이내에 승인여부가 결정되어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.
2. 승인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,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해야 합니다.
3.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.
4.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] 연장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
## 08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



- 신청인은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대해 **이의신청**할 수 있습니다.
-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, **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**로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**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65호]** **이의신청서**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이의신청일로부터 **20일 이내**로 승인 여부가 재결정됩니다.
-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, **그 결과를 MSDS에 반영**해야 합니다.

## 09 MSDS 대체자료 기재 제외 물질

[법적근거]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9호 「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」 제16조(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)

- ① 산안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급지물질
  - ② 산안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
  - ③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
  - ④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
  - 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
  - ⑥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
- \* 유해화학물질(유독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) 또는 「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, 돌연변이,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」(환경부고시 제2018-232호)이면서 한계농도 이상인 경우

## 국외제조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?

### 01 국외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

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수입업체를 대신해 MSDS 제출, MSDS 외 구성성분 제출 또는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 등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
### 02 국외제조자 선임자의 조건

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(법인인 경우 그 소재지를 의미)를 가진 자

### 03 국외제조자 선임자의 수행 가능한 업무

- MSDS 작성·제출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62호 서식]의 화학물질 확인서류 제출
-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승인, 이의신청 등

## 04 국외제조자 선임자의 의무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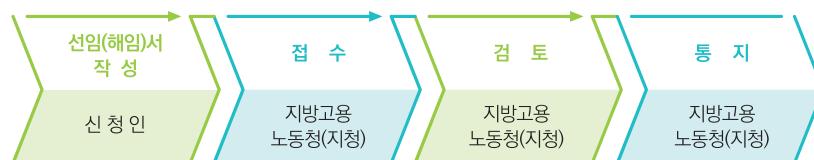
- 국외제조자에 의해 선임·해임된 사실을 관할노동청(지청)에 신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69호서식]의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
※ 신고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68호]와 함께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 및 선임, 해임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

※ 관할노동청(지청)확인 : 고용노동부민원마당>민원정보>관할관서찾기>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

[https://minwon.moel.go.kr/minwon2008/search/search\\_typeB.do](https://minwon.moel.go.kr/minwon2008/search/search_typeB.do)

### [신고증 발급 처리절차]



-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**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.**
-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**제출**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**반영**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
- 그 외 선임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



## 관련 홍보자료 찾아보기

'21.1.16.부터 시행된 MSDS 제도와 관련된 동영상은  
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→ 자료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'

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 
(<https://msds.kosha.or.kr>) → 정보포탈 → 자료실 → 관련 자료 확인  
☞ MSDS 제도 관련 문의 : 042) 869-0388



